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2/2/16 통권 1558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섬긴다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은종 회계사 :
- 창업자·회장·최고경영자 등의 고액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규정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세무상 처리방법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 추가 공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혼합공급은, 각각 가능한 별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 재무제표상 재무비율 개선 위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 >

개념 항목	회계처리 반영	세무조정 등	근거규정
원칙 자산의 평가차의	해당자산 증액하고 영업의 수익반영	익금불산입 · 유보	법인세법 제18조
건물의 평가의	해당자산 증액하고 영업의 수익반영	①익금불산입 · 유보	법인세법 제18조
설비의 평가의	해당자산 증액하고 영업의 수익반영	②익금불산입 · 유보	법인세법 제18조
대응감가상각비	원가 · 비용반영	반영된 감가상각비의 부인 (= ①, ② 익금불산입 유보액의 감소로 차감)	법인세법 제67조
토지의 평가의	토지증액, 영업외수익	익금불산입 후 처분시 익금산입 (감가상각비는 없음)	법인세법 제67조
보험회사 자산	자산증액하고 영업수익반영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42조
재고자산	자산증액하고 영업수익반영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42조
외화자산부채	자산증액하고 영업수익반영	차익 : 익금 차손 :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58호 / 주간 7호

2022. 2. 1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족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재무대표상 재무비율 개선 위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	표지
긴급시사해설	창업자·회장·최고경영자 등의 고액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규정	2
CEO에세이	CEO는 섬긴다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6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부가세액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문의	7
	- 차량렌트 취소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시급관련	
눈에 맞는 절세미인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세무상 처리방법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10
	- 고용중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
직장인 Survival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재할용권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안-2850, 2021.06.29)	13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을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을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안-4422, 2021.07.20)	14
세정뉴스와 해설	중소기업 ESG 교육 세제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도 문턱 낮춰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혼합공급은, 각각 가능한 별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함	13
세무정보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6
	- 편법중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29
회계정보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41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8

# 창업자 · 회장 · 최고경영자 등의 고액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규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창업자의 퇴직시 받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별도소득 분리함 : 2개의 세목구분으로 낮은세금 적용
2.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의 연분연승법 적용(근속기간으로 나눔)으로 낮은세율 적용됨.
3. 퇴직금 지급액 중 소득세법상 낮은세금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축소규정됨(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1)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임원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배율 모두 인정(예시 : 창업자 등 5배수)
  -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연간지급배율 3배수까지만 인정
  - 3) 2020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연간 지급배율 2배수까지 인정, 초과분은 근로소득임.
4. 계산사례 : 근무기간(예시 : 2003. 1. 1~ 2022. 12. 31.까지 20년 근속 가정) 3년간 평균연봉 3억원, 퇴직금 25억원 지급
  - 1) 퇴직소득인정금액 : 3억원 × 10% × (9년 × 5배 + 8년 × 3배 + 3년 × 2배) = 22.5억원
  - 2) 초과액은 퇴직시점의 근로연봉임. 25억 - 22.5억원 = 2.5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최소 6천6백만원임.
5. 퇴직소득 인정금액 22.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계산(소득세법 제48조)
  - 1) 환산퇴직급여 : (22.5억 - 20년 근속공제 1,200만원) ÷ 20년 × 12 = 1,342,800,000
  - 2) 표준화된 환산급여 차등공제 후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1,342,800,000원 - 환산급여공제(100~35%) 516,480,0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826,320,000원
  - 3) 누진세율 적용 후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 826,320,000원에 6~45% 적용 : 5억원까지 170,600,000 + 5억 초과액의 42% 137,054,400 = 307,654,400 ÷ 12 × 20년 = 512,757,333 × 1.1 = 564,033,066원

6.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의 표준화된 환산급여공제

800만원까지는 100%, 800~7천만원까지 : 800만원 + 초과액의 60%, 7천만~1억원 :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액의 55%

1억~3억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45%, 3억 초과 : 1억5,150만원+3억원 초과액의 35%

7.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b>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b>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b>ABC</b>		③ 대표자(성명) <b>가나다</b>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임원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 ]부					
	⑧ 주 소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속연도	<b>2003년01월01일</b> 부터		<b>2022년12월31일</b> 까지		⑫ 퇴직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input type="checkbox"/>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⑬ 근무처명				<b>ABC</b>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b>2,250,000,000</b>		<b>2,250,000,000</b>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b>2,250,000,000</b>		<b>2,250,000,000</b>				
근속 연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기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b>03.1.1</b>	<b>03.1.1</b>	<b>22.12.31</b>	<b>23.1.10</b>					
	최종 근속연수						<b>240</b>				<b>20년</b>
	정산 근속연수					<b>240</b>				<b>20년</b>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⑰)					<b>2,250,000,000</b>					
	㉘ 근속연수공제					<b>12,000,000</b>					
	㉙ 환산급여[(㉗-㉘)×12배/정산근속연수]					<b>1,342,800,000</b>					
	㉚ 환산급여별공제					<b>516,480,000</b>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b>826,320,000</b>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㉜ 환산산출세액(㉛×세율)					<b>307,654,400</b>					
	㉝ 퇴직소득 산출세액(㉛×정산근속연수/12배)					<b>512,757,333</b>					
	㉞ 세액공제					-					
	㉟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㊱ 신고대상세액(㉝-㉞-㉟)					<b>512,757,333</b>					
이연퇴직 소득 세액 계산	연금계좌 입금명세서										
	㊲ 신고대상세액(㉞)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㊳ 계좌입금금액	㊴ 퇴직급여(⑰)	㊵ 이연 퇴직소득세(㊲×㊳/㊴)			
	㊶ 합 계										
납부 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㊷ 신고대상세액(㉞)		<b>512,757,333</b>		<b>51,275,733</b>				<b>564,033,066</b>		
	㊸ 이연퇴직소득세(㊵)										
	㊹ 차감원천징수세액(㊷-㊸)		<b>512,757,333</b>		<b>51,275,733</b>				<b>564,033,066</b>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CEO는 섬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황제는 군림하고 CEO는 섬긴다. 황제는 통치자이지만 CEO는 동반자다. 일찍이 노자(老子)는 ‘굳세고 강한 것은 죽고, 부드럽고(柔弱) 낮은 것(處下)은 산다’고 갈파했다. 예수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을 밝혔다. 리더를 공복(公僕)이라고 하는 것도 낮은 말이 아니다. 결국 군림하는 통치자는 멸절(滅絶)하고 섬기는 동반자는 번영함을 뜻한다.

미국 AT & T의 로버트 그린리프도 가장 생명력 있는 일터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주창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요즘은 조직도를 과거와 달리 역삼각형으로 그리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맨 위에 사장, 밑으로 사원이 있던 과거의 피라밋 구조가 아니다. 그 반대다. 맨 위에 고객이 있다. 그 다음에 사원과 임원 그리고 맨 밑에 CEO가 있다. 자기 변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조직도다. 바야흐로 지력사회(Knowledge-Power Society)이며 정보화 사회다. 사람중심경영(Human-Based Management)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짊어진 CEO에게는 섬겨야 할 고객 넷이 있다. 이른바 ‘4고객론’이다.

고객, 종업원,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협력회사와 사회가 그것이다.

첫째, 고객을 섬겨야 한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그만큼 불변의 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의 존 에이커스처럼 고객의 소리를 듣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시적 성공에 도취되어 오만의 프로로 침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고객관리라는 말도 불경스럽다. 고객봉사시스템이라고 바뀌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든 마찬가지다. 과거처럼 ‘백성을 통치’하느니 ‘통치자금’이니 하는 말은 모독이다. 국가경영, 국정운영, 국민봉사시스템이 옳은 말이다.

둘째, 종업원을 섬겨야 한다. 과거처럼 품삯을 주니 시키는 대로하라고 해서 되

는 세상이 아니다. 솔선 수범이 먼저다. 따라서 정성을 다하는 가슴경영(Heart-Based Management)이 이루어지려면 종업원을 동반자로 섬기는 철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내부의 직원들 역량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브라이튼한 두뇌를 영입하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열린 조직·유연한 조직을 항상 유지토록 해야 한다. 또 종업원을 섬기라는 것이 잘못을 덮어주라는 것도 아니다. 성공적인 종업원의 의욕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후계자 발굴과 육성에 10년 이상 심혈을 기울인 잭웰치의 경고다.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감원을 단행했다. 당시 유한 김벌리의 CEO 문국현 사장의 역발상은 신선했다. 바로 동반자 정신과 섬기는 경영철학의 개가(凱歌)이기 때문이다. 4조2교대를 통해 감원없는 일의 나눔(Job Sharing)과 종업원의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통하여 기업력을 배가시켰다. 그래서 IMF를 무색케 만들었다. 기업문화 개혁 프로그램인 '비전 21C Document'에 의한 경영이 값진 결실을 보였던 것이다.

셋째, 주주와 채권자를 섬겨야 한다.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업이 경제적 성과인 이익을 창출치 못하면 그것은 최악이다. 사회의 자본, 인력, 물자를 남용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퍼먹고도 정신 못차리고 뽀뽀스런 상당수 한국의 기업과 금융권의 CEO들을 보면 통탄스러울 뿐이다.

넷째, 협력회사와 사회를 섬겨야 한다. 하청회사를 말로만 동반자인 협력회사로 바뀌놓고 이른바 업자들을 변사또 기생점고하듯 향응과 접대 그리고 비자금 조성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존재한다. 절세라는 등 꼼수 부리지 말고 세금을 당당히 내는 것도 두말할 필요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영컨설턴트 데브라 벤튼의 지적처럼 CEO는 특정기업만의 리더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의 공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CEO 재직 시에는 고객과 주주가 평가하지만 퇴임 후에는 사회가 평가한다.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Q**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법정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46조 8호, 동법 시행령 35조 6항)

이때, 당해 보험이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는 것인지,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험금이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부가세액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문의

**Q**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중 1,400만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시 발생하는 수출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수출비용이 2,50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포워딩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원금 1,400만원, 회사발생분 1,100만원 각각 2장씩 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한 1,4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을것인데,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지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열거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재원에 정부출연금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무관한 것임

## 차량렌트 취소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Q**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차량 렌트 계약에 대한 취소 수수료로 렌트카 사업자에게 월 렌트비의 10%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취소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A**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사급관련

- Q** 기업회계기준에서
1. 매출처로부터 사급을 받는 원재료가 있고, 이부품포함해서 제조를 해서 완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매출에서 사급품만큼 차감해야하는지요?
  2. 차감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회계처리 방법, 흐름등 구체적으로)
  3. 마감이후 차감관련 회계처리를 하면 원가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재처리 하고 마무리 하는지?
- A**
1. 일반적으로 유상사급이나 무상사급 모두 임가공업체는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일부 원재료만 사급을 받고 나머지는 귀사가 직접 조달하여 제품 완성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사급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전체 완제품에 대해서는 매출로 각각 인식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대금은 매입과 매출에서 상계처리후 차액에 대해서만 수수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매입, 매출에 대해 각각 주고받아야 합니다.

#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세무상 처리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사외이사나 비상근임원 등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비용을 흔히 거마비라고 하는데, 실무상 이들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처리를 할 것인가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등의 제수당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비상근임원 등에게 회의참석차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임

임원중에는 항시 상주하지 않고 근무가능시간의 일부나 특정업무에 대하여만 실무적으로 간여하는 비상근임원이나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대주주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라도 회사 정관에 의해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곤 한다. 이때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대がい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하지만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 상관없이 직무에 실질적 종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일반적으로 임원이라 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데로 회사의 정관이나 지급규정 등에 의한 급여나 상여금의 지급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며,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원은 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은 물론 감사 및 이사·감사 등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등기·비등기여부, 법정임원 여부, 상근·비상근여부 또는 직책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직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직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이면 회사내부나 외부의 구분없이 이사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는 모두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라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할 수가 있다(서이 46012-11401, 2002. 7.19 ; 법인 22601-1121, 1991. 6. 3).

그러나 실비변상적 급여라도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 내이어야 한다. 만약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상이라면 그 초과금액은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하에서 통용된 실비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이사회 등 참석의 경우 왕복차비와 식사대 정도의 실비로서 10만원~15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그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차 방문시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 등의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면 된다.

###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세무처리

구분	세무상처리	비고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른 보수	근로소득으로 처리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비해 너무 과하거나 비상근임원이 대주주나 친인척 등이면 배당소득으로 처리(손금불산입)
상여금 지급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지급기준 초과지급은 배당소득으로 처리(손금불산입)
퇴직금 지급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지급기준 초과지급은 배당소득으로 손금불산입함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에 따른 거마비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항공료 등)는 비과세처리	초과과다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근무와는 별도로 고문, 강사료 지급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처리(3.3%로 원천징수)	실무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함. 그러나 고용관계 없는 경우는 일시적 용역으로 기타소득으로도 처리함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기본공제)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본인	없음	없음	없음	1명당 150만원
배우자	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 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20세 이하*		없음	
장애인 직계비속 의 배우자	없음		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 60세 이상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화

####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만)	100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

\* 70세 이상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고용중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청년,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기타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수도권	1100	700
	지방	1300	770
중견기업	수도권	800	450
	지방	900	450
대기업	수도권	400	-
	지방	500	-

(단위 : 만원,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이 20%을 초과 또는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 3억원 초과면 보유 주택 수로 인정</li> <li>-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증부세율은 0.6-3.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증부세율은 1.2-6.0%</li> </ul>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는 주택 상속지분이 큰 사람 &gt;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gt;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li> <li>- 상속주택을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일반 양도세율(6-45%)을 적용</li> </ul>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3.16%,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 1주택자라면 1.1-3.5%, 다주택자는 8.4-13.4%의 취득세율이 적용</li> </ul>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하나를 배우더라도 여러번 도전하고 시도해서 실패를 거듭한 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정답을 이미 알고 도전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차님의 명언을 보면 틀리는 것과 실패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실패할 줄 알면서도 도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쉽다고 하는 일들도 누군가는 쉽게 해내지 못하거나 여러 번의 실수를 거듭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알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오히려 하나를 알기 위해 여러 번 실패했음 이 더 낫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처럼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입니다.

어렵게 얻어지는 것 일수록 더 오래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틀리는 것과 실패하는 것은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

-차님

출처 : 희망우체통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혼합공급은, 각각 가능한 별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11, 2021.07.07

### 질 의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축을 위하여 두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외와 참외말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참외청, 참외잼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

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850, 2021.06.29

### 질 의

- A법인은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B재단 및 C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선택하는 경우 음료가격과 별도로 개당 1천원의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수령하여 매월단위로 B재단에 전달하고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B재단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 보증금을 운용·관리\*하며 그 중 일부를 리유저블컵 제작 및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함

### 질의요지

- 고객이 음료 구매시 음료가격에 재활용컵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쟁점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4422, 2021.07.20

**질 의**

- (질의1) '19사업연도 경정청구를 취소(수정신고)하고 '20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20년 5월에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 목적, 유형자산의 분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험연구용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제2호

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제과-366, 2021.08.10

**질 의**

- 공익법인들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들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제1안) 공익법인들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  
(제2안) 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

**회 신**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중소기업 ESG 교육 세제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도 문턱 낮춰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조세감면 대상에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산업발전법상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가 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8%에서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근로자 임금을 3.8%를 넘겨서 연봉을 늘려 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3%만 넘겨도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관련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 1가구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대상은 1가구1경차 소유자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 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휘발유경유LPG를 넣었을 경우 세금 중 0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유류세 인화가 진행되는 4월말까지는 0당 128원을 환급 받는다. 정부는 유가 상승세와 공급수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가 필요하며,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빼고 대금을 청구하기에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 기업회생 위한 대주주 출연... 상장주식 할증평가서 제외

법인 회생을 위해 거래하는 대주주 상장주식은 할증평가서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시가의 20%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다.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가 외 추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협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다.

##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회사에 일괄제공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 이 아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 2022. 2

- 
- (개요) '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기한 및 방법)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또한,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신고 / 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메뉴 선택
  
  -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

-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I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I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 원 이상	2%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내대상) '20년 말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로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일정) 안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 발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안내문 발송 일정 I

2. 7.	2. 8.	2. 1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종이 안내문*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 2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미리채움) '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 대상인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홈택스·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 ①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 ④ 자주 묻는 질문, ⑤ 신고오류사례, ⑥ 전자신고가이드
  - (신고서 작성사례)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 (자주 묻는 질문 등)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습니다.
  
- (주식거래내역 조회)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신고 / 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에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안내) 금융투자협회, 각 증권사 누리집을 통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신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3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1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구분	내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li> <li>·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li> <li>*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li> </ul>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 이후 양도분)</li> <li>·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li> </ul>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li> <li>·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li> </ul>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li> <li>*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li> </ul>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10% ~ 30%</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소기업</td> <td>소액주주</td> <td>10%</td> </tr> <tr> <td>대주주</td> <td>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td> </tr> <tr> <td rowspan="3">중소기업 외</td> <td>소액주주</td> <td>20%</td> </tr> <tr> <td>대주주 1년 이상 보유</td> <td>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td> </tr> <tr> <td>대주주 1년 미만 보유</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li> </ul>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li> <li>·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li> </ul>															

## 참고 2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 (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구 분	신고기한	(예시)양도일 '21. 7. 2.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2. 28.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1. 9.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2. 5. 31.

**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 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기업·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4.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6.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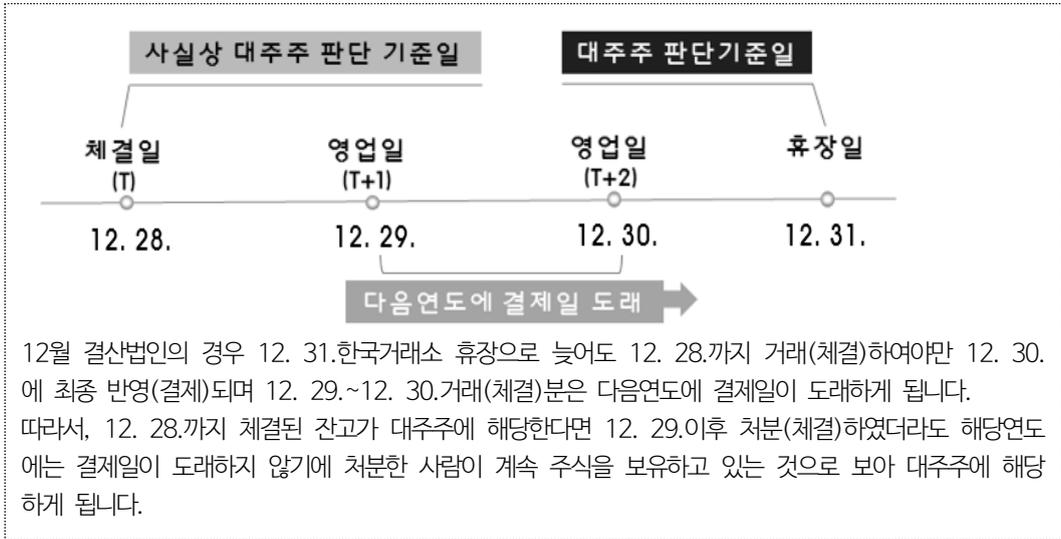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9. 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 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이번 예정신고 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11.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 12.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시면 됩니다.

## 13.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14.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

-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
- (세율) 2단계 세율로 과세(원천징수 세율은 20% 적용)

과세표준	세 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

\* ①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②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③이월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



### 참고 3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요 내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li> <li>○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li> <li>○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2. 28.)</li> <li>○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gt; 양도소득세 &gt; 주식양도 신고도우미</li> </ul>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기한: '22. 2. 28. (월) 18:00까지</li> <li>○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li> </ul>

#### ②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li>○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li>○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li> <li>○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li> </ul>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li> </ul>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li> </ul>

## 참고 4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 1.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세법정보)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취득·양도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

### 2. 신고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 3. 자기검증용 검토서

- (자기검증) 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요건 검토 및 양도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 4. 자주 묻는 질문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 5. 신고오류사례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 6. 전자신고가이드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상의 신고 흐름을 안내

### 참고 5 - 미리채움 서비스

- '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 ① (세액계산) 하반기 예정신고할 때 「상반기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 선택
  - ② (팝업)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 확인 후 물건 체크하고 선택하기
    -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메시지 없이 진행
  -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에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자동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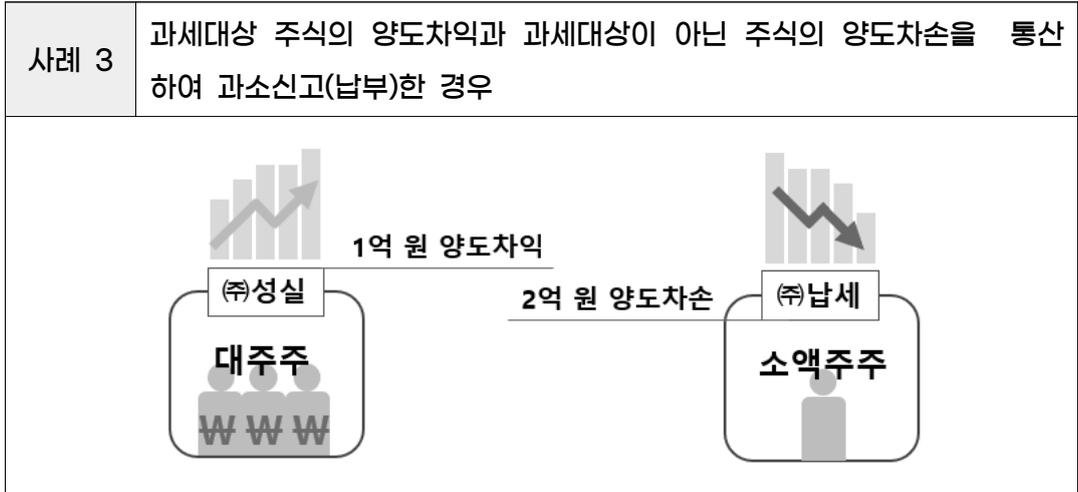
### 참고 6 -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

<b>사례 1</b>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지 않고 하반기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p><b>2021년 상반기 예정신고</b></p>  <p>양도차익 2억원 적용세율 : 20%</p>	<p><b>2021년 하반기 예정신고</b></p>  <p>양도차익 2억원 적용세율 : 20%</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style: dashed; border-width: 2px;"> <tr> <td style="padding: 5px;">과세표준*</td> <td style="padding: 5px;">3억 이하</td> <td style="padding: 5px;">3억 초과</td> </tr> <tr> <td style="padding: 5px;">적용세율</td> <td style="padding: 5px;">20%</td> <td style="padding: 5px;">25%</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td> </tr> </table>		과세표준*	3억 이하	3억 초과	적용세율	20%	25%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	3억 이하	3억 초과								
적용세율	20%	25%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										

-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상장법인 대주주 A씨는
  - '21년 하반기에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하반기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연간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sup>1)</sup>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sup>2)</sup>하여야함
  - 1) 상반기 신고내역을 합산하고, 적용세율 및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할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 2) 상반기 신고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2년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함

<b>사례 2</b>	<b>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b>2021년 국내주식</b></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2021년 국외주식</b></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은 ○ 확정신고기간에만 가능 (2022년 5월)</b></p> </div>	

- 대주주 A씨는 '21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하였음
  - 하반기 예정신고 시 국내·국의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생략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1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에 국내주식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이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함
  -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납세자 A씨는 상장법인 (주)성실과 상장법인 (주)납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다 '21년 하반기 중에 양도하여, (주)성실 주식 양도차익 1억 원, (주)납세 주식 양도차손 2억 원 발생
  - \* (주)성실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납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22년 2월 예정신고시 A씨는 (주)성실과 (주)납세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손 1억원, 납부세액은 없음으로 신고함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주)납세의 양도차손은 (주)성실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 예정신고시 (주)성실의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4일(금)	2월 7일(월)	2월 8일(화)	2월 9일(수)	2월 10일(목)
미 달 러 (USD)	1205.40	1199.50	1199.40	1197.80	1196.00
일 본 엔 (JPY)	1048.40	1040.19	1042.37	1035.94	1035.09
영 국 파 운 드 (GBP)	1639.34	1623.28	1623.27	1622.42	1618.79
캐 나 다 달 러 (CAD)	950.82	940.78	946.83	942.89	943.74
홍 콩 달 러 (HKD)	154.67	154.01	153.92	153.68	153.51
위 안 화 (CNH)	189.39	188.82	188.52	188.31	187.81
유 로 화 (EUR)	1378.62	1374.27	1372.27	1367.29	1366.19
호 주 달 러 (AUD)	860.96	849.61	854.51	855.77	858.55
싱 가 폴 달 러 (SGD)	896.94	891.66	892.31	890.43	891.31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8.13	287.00	286.58	286.23	285.80

#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2. 2

- 
- (착수 배경)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 ①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업카족 41명
    - ②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 ③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1.26.)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 조사대상자 227명

-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 41명

**사례 ①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 ◆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억원을 증여받고,
  -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

**사례 ②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 ◆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함
  -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사례 ③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이자·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

- ◆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

-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

**사례 ④ 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자**

-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억원 차입
  -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⑤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 ◆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⑥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입니다.

사례 ⑦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 ◆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 ⑧

**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 ◆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3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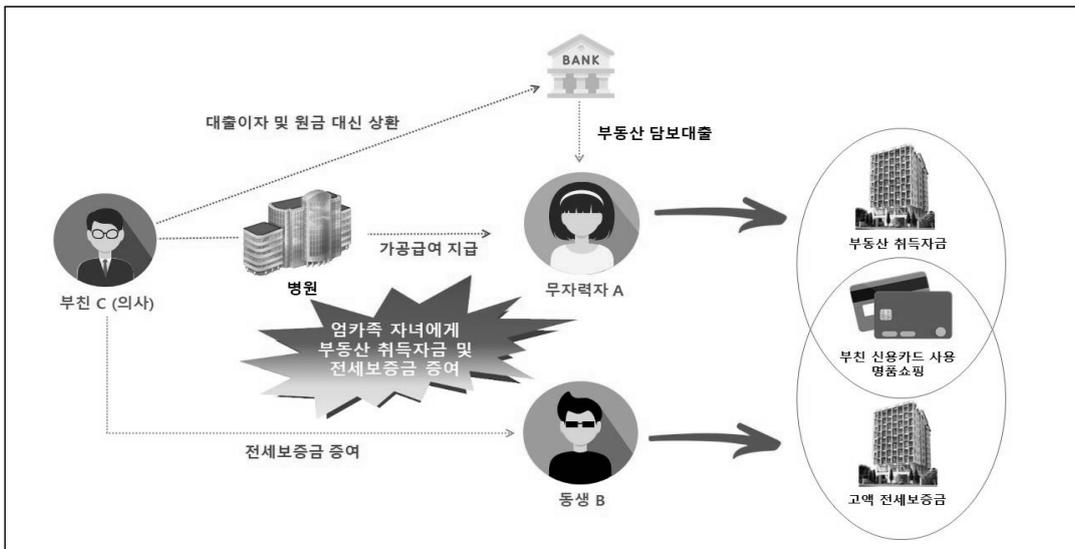
□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습니다.
-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 사례 1 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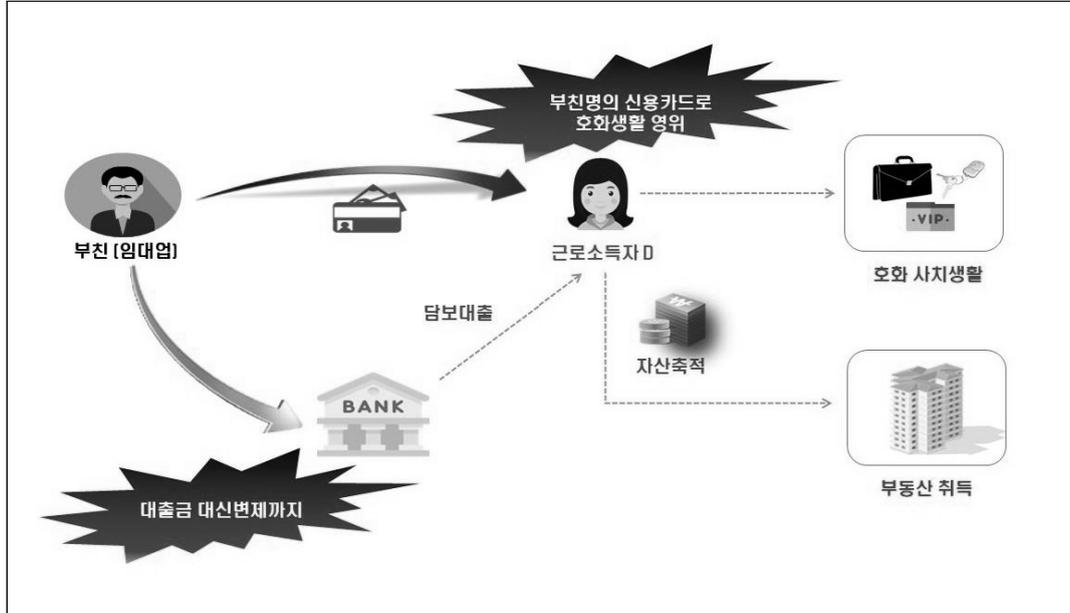
- 무자력자 A와 동생 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〇〇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 C 및 무자력자 A, 동생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동시 착수

## 사례 2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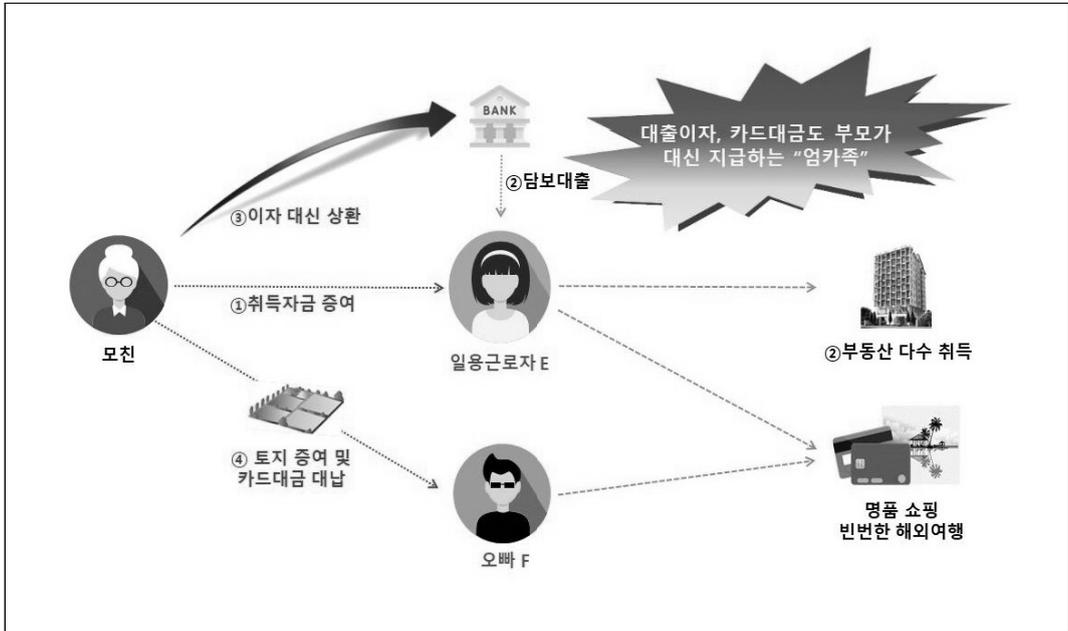
-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근로소득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3**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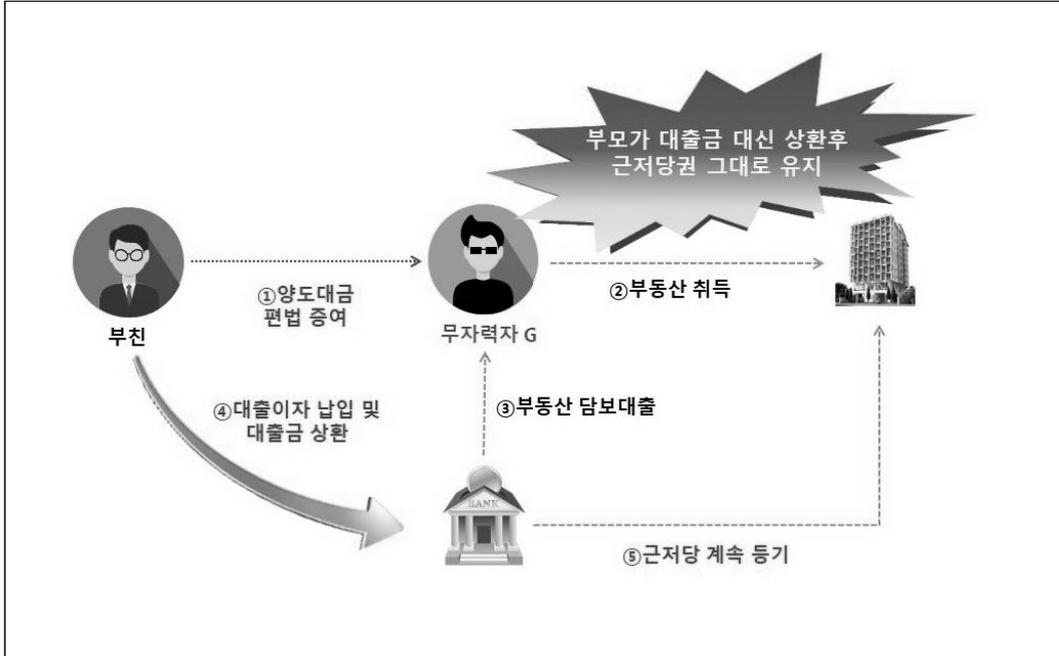
- 일용근로자 E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하고 ○○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분석한 결과
  -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 자녀들의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을 모친이 대납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모친이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4** 자녀가 대출받은 금융채무의 이자 및 원금 대부분을 부모가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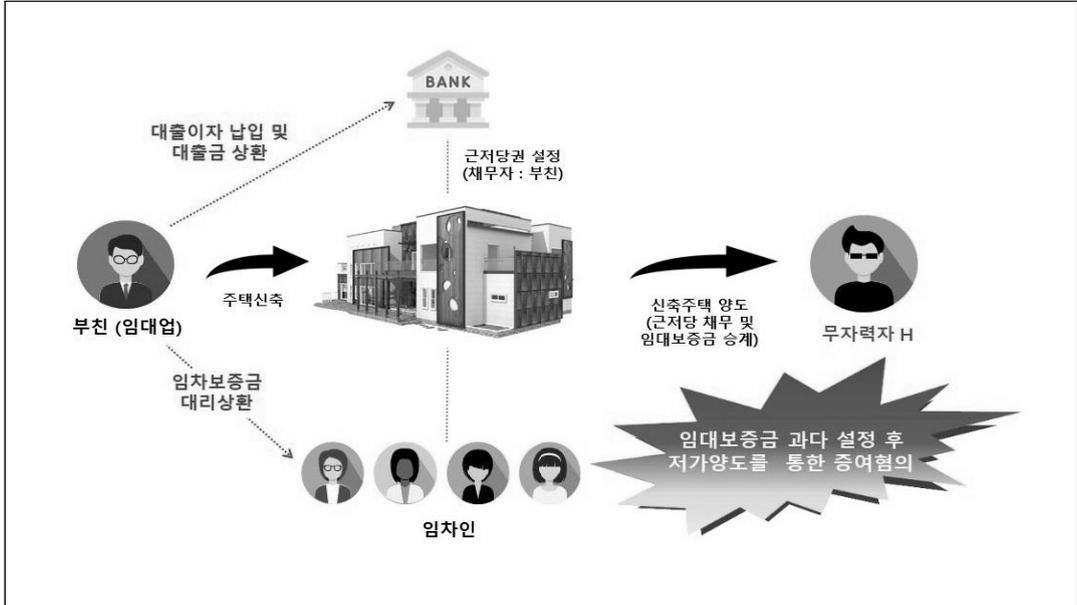
-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G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〇〇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 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무자력자 G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5**    **고액의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과다 설정 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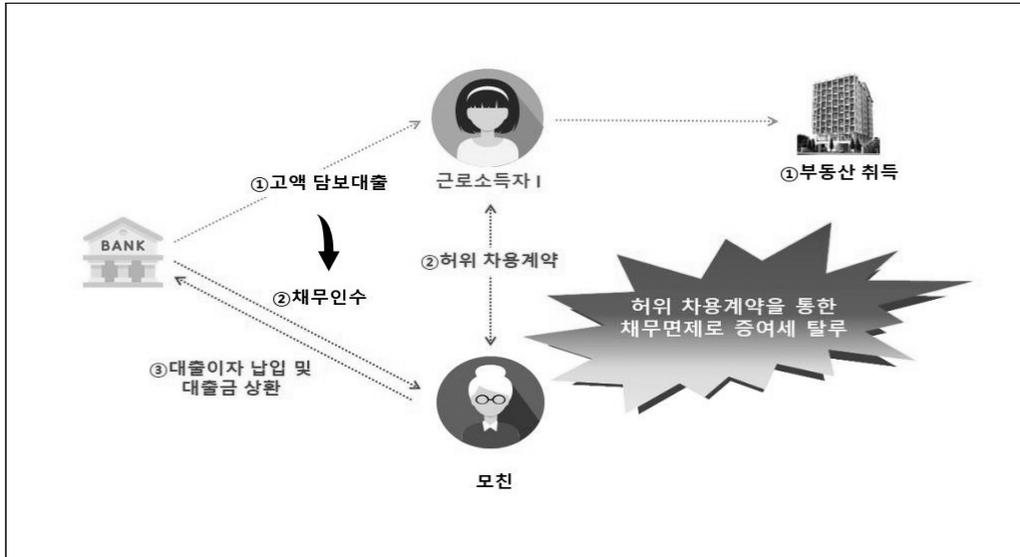
-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 및 취득가액 〇〇억 원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었으며,
  -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가 확인되었음
  - 또한,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무자력자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6 부모가 자녀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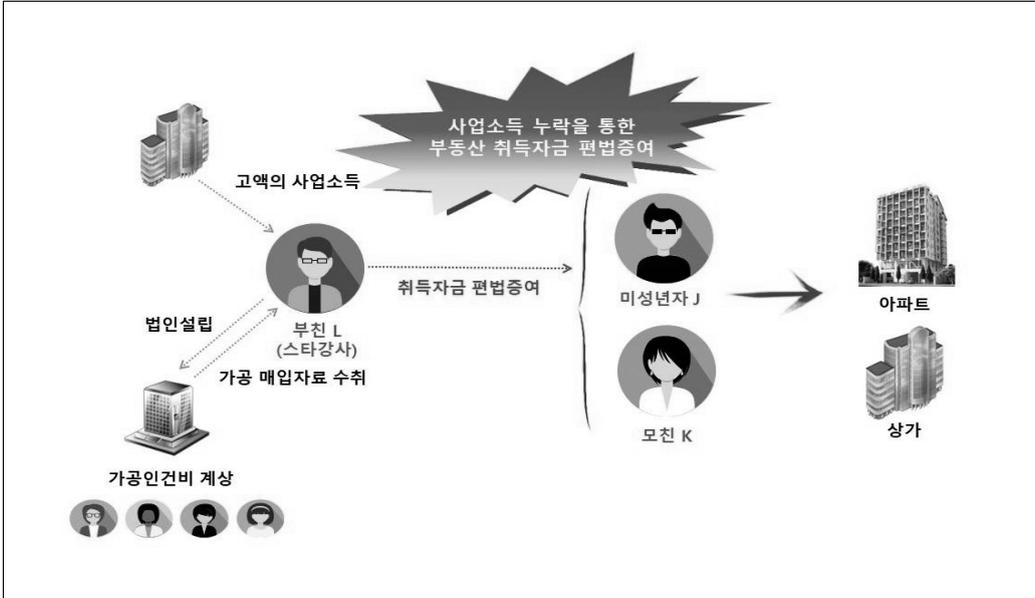
- 근로소득자 I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〇〇억 원을 자력없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자녀 I는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근로소득자 I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7 부친의 사업소득 누락 및 부동산 양도대금 편법 이전으로 가족 명의 다수의 부동산 취득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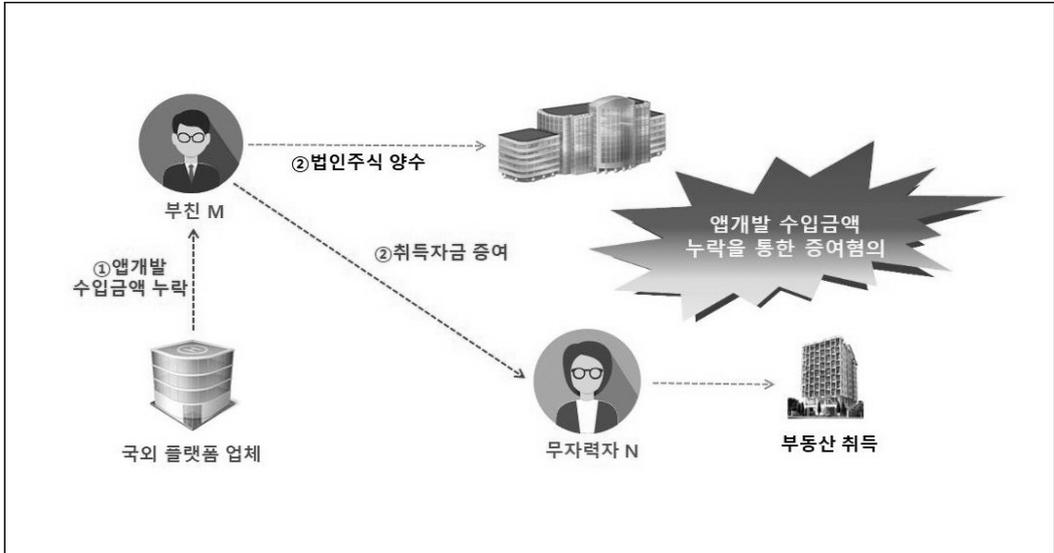
-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J와 모친 K가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〇〇억 원에 취득하여 그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L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 또한 부친 L이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미성년자 J와 모친 K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부친 L과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 동시착수

## 사례 8 앱 개발 수입금액 누락으로 법인 주식 및 자녀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 주요 혐의내용



-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부친 M의 주식 취득자금 및 무자력자 N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부친 M은 휴대폰 어플 개발자로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주식 ○○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 N은 부친 M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 조사 방향

- M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녀 N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금융감독원, 2022. 2

##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11년~'14년의 지적사례 27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81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0년간('11년~'20년)의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
    -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21.6월 15건('20년)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sup>1</sup>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sup>2</sup>
  -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112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 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11년~'14년중의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임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개)

공개 시기	'19.12월	'20.8월	'21.6월	'21.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년~'19년	'15년~'17년	'20년	'11년~'14년	'11년~'20년
공개사례 수	29	37	15	27	108
①매출·수익인식	4	12	5	4	25
②재고자산	3	1	-	-	4
③지분·금융상품	4	6	5	4	19
④유·무형자산	4	4	1	-	9
⑤기타자산·부채	7	5	2	8	22
⑥주석미기재	2	3	1	4	10
⑦기타	5	6	1	7	19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채권 관련
  -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지분·금융상품
  -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아니함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계속)

-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재무적투자자로서 타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동 풋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함
- 기타자산·부채
  -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함
  -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E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함

□ 주식 미기재

-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H'사와 'I'사간의 매출, 매출채권 등의 기중거래 및 기말잔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식으로 공시하지 아니함

\*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

###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 '22년 상반기 중 '21년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붙임 1 - 2011년 ~ 2014년 감리 지적사례 목록(27건) 및 예시

### 1 목 록

#### ① 매출·매출원가·수익인식 등(2건)

1. FSS/2112-01 매출 허위계상
2. FSS/2112-02 매출 및 매입 등 허위계상

#### ② 매출채권 및 관련 대손충당금(2건)

1. FSS/2112-0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112-04 매출채권 과대계상

**③ 금융상품 및 관계회사 투자주식(4건)**

1. FSS/2112-05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2. FSS/2112-06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3. FSS/2112-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4. FSS/2112-08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④ 기타자산·부채(8건)**

1. FSS/2112-09 선급금 과대계상
2. FSS/2112-10 자산·부채 과소계상
3. FSS/2112-11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4. FSS/2112-12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5. FSS/2112-13 선급금 허위계상
6. FSS/2112-14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7. FSS/2112-15 대여금 허위계상
8. FSS/2112-16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⑤ 우발부채 및 부외부채(2건)**

1. FSS/2112-17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2. FSS/2112-18 선수금 미계상

**⑥ 연결재무제표 자산·부채 미상계(2건)**

1. FSS/2112-19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2. FSS/2112-20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매입채무 미상계

**⑦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 미기재(4건)**

1. FSS/2112-2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2. FSS/2112-22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3. FSS/2112-23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4. FSS/2112-24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⑧ 기타 지적사항(3건)**

1. FSS/2112-25 자기주식 허위계상

- 2. FSS/2112-26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3. FSS/2112-27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2 예 시

### 감리 지적사례 FSS/2112-05 :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쟁점 분야: 관계회사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여, '11.5월 C사(비상장기업) 주식 27만주(지분율 10.8%)를 33억원, '11.12월 D사(비상장기업) 주식 25만주(지분율 3.9%)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C사 및 D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동 투자주식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E 및 F가 피투자회사인 C사 및 D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C사 5회, D사 2회)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유한 C사 및 D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관계기업투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를 64억원 과소계상(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63억원 등)하였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억원<sup>\*1</sup> 및 지분법평가이익 2억<sup>\*2</sup>원을 과소계상하였다.

\*1 피투자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 보유 지분율이 감소(10.8% → 9.9%)함으로써 발생

\*2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반영

#### 회사 대표이사의 피투자회사 겸직 현황

구 분	B사(최대주주)	C사(피투자회사)	D사(피투자회사)
회사의 대표이사 E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6 및 문단7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문단7에 예시한 경우\* 등)는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7)

-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
-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C사 및 D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들에 대한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당기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관계기업 투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20%) 외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단순히 지분율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 지적사례 FSS/2112-11 :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 쟁점 분야: 미지급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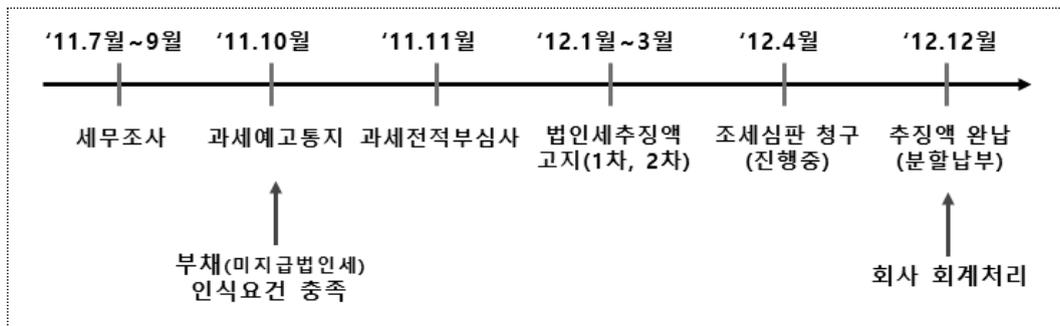
### 1 회사의 회계처리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11.7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1.10월 과거에 과소납부한 법인세 52억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11.1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2.2월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내렸고 법인세추징액은 '12.1월 1차 고지(8억원) 및 '12.3월 2차 고지(나머지 44억원)되었다. 회사는 '12.1월 1차 고지액을 납부하고 '12.3월 2차 고지액 중 일부를, '12.12월 나머지 2차 고지액을 모두 납부(모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12.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과세예고통지 이후부터 미지급법인세를 계속 계상하지 않다가 '12년 결산시 재무제표에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반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1.10월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부채(미지급법인세)의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1년부터 '12년 3분기까지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 추징 과정 및 회계처리 시점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12에 따르면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 문단4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무로서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금융감독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향후 과세 납부를 통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및 금액에 대한 신뢰가능성 측면에서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1년에 대한 기말감사 시, 회사가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감사인은 '11년 중 세무조사가 있었고 기말감사 현재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무조사 결과 및 법인세 추정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과세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과세납부고지 등 과세의무 및 금액이 확정되기 전, 즉 거래나 사건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